

- 비상구 폐쇄·소방시설 차단·불법주차 -

3대 불법행위 119 소방안전패트를 중점조사 안내

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.

최근 용인 창고시설화재, 이천 공사장화재,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화재, 의정부 대봉 그린아파트 화재 등의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너무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

귀하께서 운영하고 있는 건물도 다중이용·피난약자 수용시설 등의 업종이 입주해 있거나, 다수의 재실자 및 가연물로 인해 화재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이에 3대 불법행위(비상구 폐쇄, 소방시설 차단, 불법주차) 및 공사장 내 무허가 위험물 저장·취급,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등으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패턴·반복 불시단속을 연중 실시하오니, 단속 시 불량사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.

3대 불법행위 관련 안내사항

○ 조사근거

- 「소방시설법」 제4조(소방특별조사) 내지 5조, 9조(소방시설 유지관리), 10조(피난시설등 유지관리)

☞ 「소방시설법 시행령」 제7조(소방특별조사의 항목) 단서(소방시설, 피난시설·방화시설 등)

- 「도로교통법」 제35조(주차위반에 대한 조치)

☞ 「동법 시행규칙」 제12조(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), 「동법 시행규칙」 제32조 및 33조(주차금지의 장소)

○ 조사범위 : 비상구 폐쇄, 소방시설 차단, 불법주차

○ 위반 시 조치사항

- 비상구 폐쇄 : 「소방시설법」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- 소방시설 차단 : 「소방시설법」 제48조에 따른 5년(7년,10년)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(7천만원,10억원) 이하 벌금 부과
/ 「소방시설법」 제53조 제1항 제호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- 불법주차 : 「도로교통법」에 의한 위반내용 채증 후 시·군 통보 ⇒ 시·군에서 과태료 부과

양주소방서에서는 언제나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한 양주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, 귀하께서도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양 주 소 방 서 장